

무배당  
하나개인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하나생명보험(주)

# 확 인 서

무배당 하나개인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을 변경함에 있어서 협정서, 사업방법서, 약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부담금 및 적립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2년 9월 19일

하나생명보험(주)  
선임계리사 서 종 무 (인)

무배당 하나개인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사업방법서

하나생명보험(주)

(사업방법서 별지)

##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하나개인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 2. 사업경영의 지역

다음 각 항의 해당하는 자가 생활하는 전 지역으로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 제 6 호에서 정하는 퇴직급여제도(이하 "퇴직급여제도"라 한다)로부터 법 제 2 조 제 5 호에서 정하는 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제도"라 한다) 계정으로 지급받은 자

나. 법 제 2 조 8 호 또는 9 호에서 정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제도를 추가로 설정한 자

다. 상시근로자 10 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법 제 2 조 제 2 호에서 정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제도를 설정한 경우 제도의 적용을 받는 해당 근로자

## 3. 단체,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단체

이 보험에서 "단체"는 법 제 24 조에 의해 제도를 설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나.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

이 보험에서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는 동일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속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집단으로 한다.

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이 보험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법 제 24 조 및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여 이 제도를 설정하거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제도를 추가로 설정한 자(이하 "개인형가입자"라 한다.)로 한다.
- (2) 상시근로자 10 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이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의 해당 근로자(이하 "기업형가입자"라 한다)로 한다.

## 4. 보험종목의 세목

가. 주계약

(1) 개인형

- 금리연동형
- 이율보증형(이율보증기간 : 1년, 2년, 3년, 5년)

- 실적배당형(채권형, 혼합형, 인덱스혼합형)

(2) 기업형

- 금리연동형
- 이율보증형(이율보증기간 : 1년, 2년, 3년, 5년)
- 실적배당형(채권형, 혼합형, 인덱스혼합형)

나. 부가하는 특약 : 무배당 하나자산관리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

## 5. 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보험세목별 적립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구 분		공시이율
금리연동형		금리연동형 공시이율
이율보증형	이율보증기간 1년	1년 이율보증형 공시이율
	이율보증기간 2년	2년 이율보증형 공시이율
	이율보증기간 3년	3년 이율보증형 공시이율
	이율보증기간 5년	5년 이율보증형 공시이율

나. 공시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1) 금리연동형 공시이율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계산

공시이율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하며, 향후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산출방식이 변경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회사는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2:1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 공시기준이율(%)

$$= \frac{\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2 + \text{지표금리} \times 1}{3}$$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영업수지차」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 운용자산이익률(%)

$$= \frac{(2 \times \text{산출시점 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수지차}) \times (12 / 6) \times 100}{(\text{산출시점 직전 7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산출시점 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수지차})}$$

※ 1. 투자영업수지차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2.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운용자산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한다.

3.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의 산출기간은 공시기준이율의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나)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한다.

○ 지표금리(%)

$$= \frac{A1 + A2 + A3}{3}$$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지표금리 산출시 가중이동평균이율

$$= \frac{Mi(-3) + Mi(-2) \times 2 + Mi(-1) \times 3}{6}$$

Mi(-3) :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16일부터 직전 2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 통화안정증권평균수익률

Mi(-2) :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16일부터 직전 1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 통화안정증권평균수익률

Mi(-1) :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 통화안정증권평균수익률

- (주)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3.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1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4. 각각의 이율은 각 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 월의 당월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 통화안정증권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 (2)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계산

공시이율은 각 단위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한다.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여 매월 1일, 16일 적용하고, 각 단위보험 설정일에 시장상황 및 회사 손익 등을 고려하여 단위보험별로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할 수 있다.

○ 공시기준이율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1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 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A1 : 국고채(1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1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A3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의 평균값

[2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 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 A1 : 국고채(2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2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 A3 : 통화안정증권(2년) 수익률의 평균값

[3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 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 A3 : 통화안정증권(2년) 수익률의 평균값

[5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 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 A1 :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5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 A3 : 통화안정증권(2년) 수익률의 평균값

- (주)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한다.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한다.
3.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한다.
4. 평균값은 산출일로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5 번째 영업일로부터 14 번째 영업일까지 10 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3) 제'가'항의 공시이율은 매일 회사가 산출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별 적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금리연동형 공시이율은 해당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동안 확정 적용한다.

(나)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동안 확정 적용한다.

(4) 향후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방식 변경시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3)의 적용기간 이후부터 변경된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다. 회사는 년 2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함)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한다.

라.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로 한다.

마.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을 따른다.

## 6. 부담금

## 가. 개인형

### (1) 일시부담금

계약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액 중 이 제도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일시부담금에 의해 다른 자산관리기관에 적립된 적립금을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여 납입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개인부담금

법 제 24 조 제 3 항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개인부담금에 의해 다른 자산관리기관에 적립된 적립금을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여 납입하는 금액으로 한다.

## 나. 기업형

### (1) 기본부담금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하는 금액으로 한다. 또한, 기본부담금에 의해 다른 자산관리기관에 적립된 적립금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여 납입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추가부담금

기본부담금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담금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하는 금액으로 한다. 또한, 추가부담금에 의해 다른 자산관리기관에 적립된 적립금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여 납입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일시전환부담금

일시전환부담금은 퇴직보험 등 또는 이 제도 이외의 제도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 7. 보험기간 및 부담금납입에 관한 사항

### 가.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계약의 해지일까지

### 나. 납입기간

개인형 : 일시납, 전기납

기업형 : 전기납

### 다. 수금방법

계약자의 직접납입, 금융기관을 통한 납입, 회사의 방문 수금 등

## 8. 급여의 종류

### 가. 급여의 종류 : 연금 또는 일시금

### 나. 급여의 지급

(1) 기업형: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한다. 다만,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한다.

(2) 개인형: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한다.

## 9. 해지환급금의 지급

이 보험을 해지한 경우 해지환급금을 기업형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며, 개인형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한다. 해지환급금은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적립금 이전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조기이전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금리연동형은 동일 자산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기이전수수료를 적용하며, 동일 자산관리기관으로의 이전일지라도 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의 이전 또는 오토 스위칭(보험료 분산투입, 펀드자동재배분 등)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율보증형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해지시에는 시장가격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0. 청약서 등의 서식

가. 청약서의 서식은 별첨 제 1 호의 서식으로 한다.

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서식은 별첨 제 2 호의 서식으로 한다.

## 11.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 없음

## 12.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이 보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 50 조제 1 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다.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라.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마.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운용관리기관의 중도인출 통지에 의해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나.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 50 조제 1 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다.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라.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마.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14.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가. 특별계정의 선정

이 보험은 아래와 같이 특별계정을 선정 운용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1)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 금리연동형
- 이율보증형(이율보증기간 : 1년, 2년, 3년, 5년) : 이율보증기간별로 설정 운용

#### (2)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 채권형
- 혼합형
- 인덱스혼합형

### 나.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인 경우 자산운용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하여야 한다.
- (2) 자산관리수수료 및 특별계정운용보수는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관리수수료 및 특별계정운용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자산관리수수료 및 특별계정운용보수를 적용한다.

### 다.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다만,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한함)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라.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 (1) 부담금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자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지급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① 급여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② 해지환급금 또는 적립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③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④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①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의 계정간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회사의 대출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② 실적배당형 특별계정간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금리연동형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15.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가. 펀드의 유형

- (1) 실적배당형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호로 한다.
  - ① 채권형  
국내 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및 채권형 수익증권에 펀드순자산(NAV)의 90%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 이하에서 운영함.
  - ② 혼합형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 이하로 투자하고, 국내 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및 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다만,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 이하에서 운영함.
  - ③ 인덱스혼합형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 이하로 투자하고, 국내 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및 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 200 (KOSPI200) 등을 목표지수로 하여 인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합니다. 다만,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 이하에서 운영함.
- (2) 제(1)호에서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 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상기 투자 대상은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 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펀드종류별 특별계정운영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하며, 펀드종류별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구분	특별계정운용보수(매일 적립금 기준)			
	특별계정 운영보수	특별계정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특별계정 사무관리보수
채권형	0.0005479452% (연 0.200%)	0.0003835616% (연 0.140%)	0.0000821918% (연 0.030%)	0.0000821918% (연 0.030%)

혼합형	0.0006465753% (연 0.236%)	0.0008328767% (연 0.304%)	0.0000821918% (연 0.030%)	0.0000821918% (연 0.030%)
인덱스혼합형	0.0005945205% (연 0.217%)	0.0006109589% (연 0.223%)	0.0000821918% (연 0.030%)	0.0000821918% (연 0.030%)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특별계정운영보수,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부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수수료 수준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 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제'가'항에서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 (2)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부담금은 제(1)호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된다.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운용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이버 창구로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된다.
- (4)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3)호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제'바'항 제 (1)호 제①목 내지 제③목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 5 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 (5)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제 5 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6)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의 자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 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된다.
- (2)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펀드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배분된다.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4) 펀드자동재배분은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 마.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설정시 1 원을 1 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펀드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 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총 좌수}}$$

다만, 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및 특별계정운용보수 포함)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바. 초기투자자금

(1) 회사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설정 할 수 있다.

(2) 제(1)호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실적배당형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목에 의한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 억원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②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③ 제①목 및 제②목의 규정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1) 회사는 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하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당해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당해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③ 제①목 및 제②목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제(1)호에서 정한 사유로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3) 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펀드 변경 회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아. 투자한도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의 투자한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상 투자 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 (2)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3)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자.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8 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 265 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16. 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적립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7.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세목 선택 및 변경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4. 보험종목의 세목」에서 정한 보험세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보험세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나.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보험세목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 5 영업일」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 18. 조기이전수수료의 보험세목에의 편입

협정서에서 정한 조기이전수수료는 당해 보험세목 특별계정의 수익으로 편입한다.

## 19. 이율보증형 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설정된 구좌를 말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한다.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부담금 납입시 「5. 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보증기간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공시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설정된 각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보험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나'항을 준용한다.

라. 제'다'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공시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에 회사가 공시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로 한다.

마. 제'나'항 및 제'다'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보험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개인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나이(이하 "급여발생나이"라 합니다), 기업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단체에서 정한 정년퇴직에 의한 급여가 발생하는 나이(이하 "정년나이"라 합니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정이 가능하며, 제'라'항에 의한 단위보험 자동 설정시에는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의 나이가 급여발생나이 또는 정년나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율보증기간이 가장 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한다.

바. 이율보증기간중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MVA : Market Value Adjustment) 적용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적립금에 (1- 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한다.

시장가격조정률(MVA)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1년 이율보증형 MVA

$$MVA = 1 - \left( \frac{1+i_j}{1+i_h} \right)^{n+\frac{m}{12}}$$

MVA의 최대한도는 5%, 최소한도는 0%로 한다.

$i_j > i_h$  인 경우 또는 급여의 지급인 경우에는 MVA=0으로 한다.

(2) 2년, 3년, 5년 이율보증형 MVA

$$MVA = 1 - \left( \frac{1+i_j}{1+i_h+0.5\%} \right)^{n+\frac{m}{12}}$$

MVA의 최대한도는 10%, 최소한도는 0%로 한다.

$i_j > i_h + 0.5\%$  인 경우 또는 급여의 지급인 경우에는 MVA=0으로 한다.

주) 잔여보증기간 : 단위보험 해지일부터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말일까지 기간

$n$  : 잔여보증기간의 연단위기간

$m$  : 잔여보증기간의 연미만 월단위기간(월미만 절상)

$i_j$  :  $j$  번째 설정된 단위보험에 적용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공시기준이율

$i_h$  :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공시기준이율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

$$i_h = i_{h-1} + (i_{h+1} - i_{h-1}) \times \frac{m'}{12 \times n'}$$
 (소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

$i_{h-1}$  :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공시한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나 같은 공시이율 별 보증기간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의 공시기준이율. 다만, 잔여보증기간이 공시되는 이율보증기간 중 최단기이율보증기간보다 작은 경우  $i_{h-1}$  은  $i_{h+1}$ 로 하며  $i_{h-1}$  의 이율보증기간은  $i_{h+1}$ 의 이율보증기간으로 한다.

$i_{h+1}$  :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공시한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공시이율 별 보증기간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의 공시기준이율

$n'$  :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i_{h+1}$  이율보증기간까지의 연단위 기간

$m'$  :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월단위 기간(월미만 절상)

사. 제'마'항의 경우 단위보험 만기일에 정년나이까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기간이 없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은 금리연동형으로 보험세목을 변경하여 적립한다.

## 20. 기타 사항

### 가. 용어의 사용

이 보험에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로 한다.

### 나. 계약내용의 변경

(1) 이 보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에게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계약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 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자가 (1)호의 계약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중도해지 또는 계약이전 할 경우에는 '9. 해지환급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조기이전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별첨 제1호)

##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2호)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서식